

의안번호	제204호
의결연월일	2020. 4. 1.

-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0. 3. 27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: 2020. 3. 27. 산업건설위원회
- 상 정 일 자: 2020. 4. 1.

제25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경제과장: 박문수)

가. 제정이유

-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감염병 및 재난·재해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예산군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(안 제1조 목적)
- 적용대상(안 제3조)
 - 예산군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주소를 둔 사용자와 근로자
- 재난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(안 제10조)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, 휴직, 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
- 노동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위원임기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회의 운영 등(안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7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이용수)

- 「예산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안」은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염병등 재해 및 재난 발생시 휴업·휴직·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비 등 피해 복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○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